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9. 17 선고 2019재나22 판결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0. 8. 20.

판 결 선 고 2020. 9. 17.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합7576 판결

재심대상판결 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8. 10. 10. 선고 2007나4450 판결 2.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9. 7. 3. 선고 2008재나40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14㎡, 같은 도면 표시 3, 4, 5,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83㎡, 같은 도면 표시 2, 3, 12, 5, 6, 7, 8, 9, 10,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67.37㎡를 각 인도하고, 75,000,000원 및 2001. 5. 1.부터 위 (가), (나), (다)부분의 각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 (전주)2007나4450 사건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7나4450 판결(이하 ‘제1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7576호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관리비, 재산세 등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남편인 C과 무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뒤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각 부분의 인도 및 피고가 이를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12. 13.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7나445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8. 10. 10.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08다7730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12. 24.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08. 12. 30. 제1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8재나40 판결(이하 '제2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의 확정 원고는 위 대법원 2008다77306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2008. 12. 30. 피고를 상대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8재나40호로 제1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여, 2009. 7. 3. 기각판결을 선고받자 다시 대법원 2009다54164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10. 29.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제2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제1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1) C은 소송대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음에도 제1재심대상판결은 C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민법 제187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특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가 1995. 5. 30.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 피고나 C이 그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관리비 일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증명하였음에도, 제1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또한, 원고와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C이 위조한 서류인데, 피고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진정성립을 주장하다가 제1심에서 제출한 2007. 9. 27.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계약서의 작성경위를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피고에 대한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에 관한 검찰 조사 당시에는 위 계약서에 관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위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자백하였다. 원고는 1995. 8. 31. 구속되어 1996. 7. 3. 출소하였고, 원고의 처 O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C의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 시점을 판단한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22695 판결과 당시 변론조서 등을 종합하면 위조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제1재심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위 임대차계약서 위조 사실을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제1재심대상판결은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2007. 4. 18. C와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C 전부승소 확정판결에 따른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인증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 사이에는 C이 위 소송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12025호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2007. 4. 18. 작성된 공증인가 M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1184호 지불각서 및 같은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1172호 합의서의 효력이 각 상실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위 조정조서에 어긋난다. 따라서 제1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제2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제2재심대상판결은 위 가.의 2)항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특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가 1995. 5. 30.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 등에 대한

서증을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제1재심대상판결을 한 법관이 다시 제2재심대상판결을 하였으므로, 제2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같은 항 제2호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1) 소권의 남용(제1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 부분 및 제2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 부분)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재다303 판결,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제1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08. 12. 30. 제1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심사건에서 청구기각 내지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면 제1재심대상판결 및 제2재심대상판결이나 그 밖의 재심사건의 판결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재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방식으로 거의 매년 재심청구를 하여 왔고, 제1재심대상판결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재심사건으로 총 11건을 제기하여 온 사실,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며 재심사유로 드는 것은 C의 대리권,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취득, C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의 자백 등에 관한 것으로 그동안의 재심청구사유와 모두 같거나 유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순번	재심청구일	사건번호	재심 대상 판결	결과 등
1	2008. 12. 30.	2008재나40	제1재심대상판결	2009. 7. 3. 재심청구 기각 (2009. 11. 2. 대법원 2009다54164호로 확정)
2	2009. 11. 2.	2009재나61호	제1재심대상판결, 제2재심대상판결	2010. 5. 7.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일부(나머지 청구 기각) 및 순번 1 판결에 대한 부분 각하 (2010. 8. 23. 대법원 2010다40956호로 확정)
3	2010. 8. 23.	2010재나50호	제1재심대상판결, 제2재심대상판결, 순번 2 판결	2010. 10. 29. 이 사건 재 심대상판결에 대한 일부(나 머지 청구 기각) 및 순번 1 판결에 대한 부분 각하 (2011. 1. 18. 대법원 2010다91763호로 확정)
4	2011. 1. 17.	2011재나19호	제1재심대상판결, 제2재심대상판결, 순번 2, 3 판결	2011. 7. 7. 소 각하 (2011. 10. 18. 대법원 2011다61745호로 확정)
5	2011. 10. 18.	2011재나64	제1재심대상판결, 제2재심대상판결, 순번 2 내지 4 판결	2012. 6. 11. 소 각하 (2012. 9. 21. 대법원 2012다54812호로 확정)
6	2012. 9. 21.	2012재나78호	제1재심대상판결, 제2재심대상판결, 순번 2 내지 5 판결	2013. 3. 28. 소 각하 (2013. 7. 1. 대법원 2013다29677호로 확정)

7	2014. 1. 2.	2014재나10호	제1재심대상판결	2014. 7. 17. 소 각하 (2014. 11. 18. 대법원 2014다53165호로 확정)
8	2014. 11. 19.	2014재나72호	제1재심대상판결, 순번 7 판결	2016. 1. 21. 소 각하 (2016. 7. 18. 대법원 2016다18272호로 확정)
9	2016. 7. 18.	2016재나14호	제1재심대상판결	2017. 6. 29. 소 각하 (2016. 12. 22. 대법원 2017다25109호로 확정)
10	2019. 3. 18.	2019재나15	제1재심대상판결	2019. 6. 13. 소 각하 (2019. 10. 31. 대법원 2019다17201호로 확정)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이유를 재심사유로 들어 제1, 2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심사유에 대해 이 법원으로부터 수회 판단을 받고(특히 위 표 기재 순번 1 내지 3판결에서 재심청구 기각된 부분) 재심대상판결의 적법성을 확인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바, 위 제2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위 재심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위 재심사유에 대한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재심제기기간의 도과(제1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 부분 및 제2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제9호의 재심사유 부분)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한편,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30일의 출소기간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재심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2. 30. 확정된 제1재심대상판결과 2009. 11. 2. 확정된 제2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2019. 11. 18.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로써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30일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5년 역시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위 재심사유에 기한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부가적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제1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 부분 및 제2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부분

이 부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모두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제기하였던 재심의 소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판단을 받은 사항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제1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거나 제2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 부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란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는 법관(제41조),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는 재판이 확정된 법관(제43조), 상고심에서 파기된 원심판결에 관여한 법관(제436조 제3항) 등이 이에 해당하고, 재심의 대상이 된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때에는 위 법조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31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경미, 판사 박세진, 판사 장인혜

별지